

제주지방법원 2023. 12. 21 선고 2022가단6927 판결 [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철

변 론 종 결 2023. 11. 30.

판 결 선 고 2023. 12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3,386,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1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이 사건의 쟁점

가. 기성고 비율 산정의 기준시점

나. 감정결과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토지의 평탄화작업 등 기초공사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

2. 판단

가. 기준시점

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23. 6.경까지 이 사건 공사(= 2021년경 체결된 제주시 C 지상 축사 신축공사)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2023. 6.경으로 산정함이 옳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. 9.경 이미 이 사건 공사가 타절되었음에도 이후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2022. 9.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가 타절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고,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미 구매한 자재를 이용한 공사의 필요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쉽사리 부인할 수 없는 이상,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 따라서 기성고 비율 산정의 기준 시점은 2023. 6.경으로 본다.

나. 기초공사비용 공제여부

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감정결과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에는 토지의 평탄화작업 등 기초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직접 기초공사를 하였으므로 감정결과에서 기초공사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기초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오히려

갑 제1호증(계약서, 피고는 여기에 기재된 건축주의 서명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, 나아가 그 내용을 뒤집을 반증이 없으므로, 그 내용의 실질적 진정성립도 추정된다. 따라서 그 내용은 모두 신빙하도록 한다)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작성한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는 기초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초공사를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.

다. 소결론

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2023. 6.경을 기준으로 한 기성고 공사대금은 63,386,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,000,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,386,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. 11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성욱